

# 日本 職務發明制度 및 國有特許處理規程 <抄>

## < I >

- ◎…… 本會는 1974年 4月30日字 特協資料 15號로서 國內外「職務發明制度」(附：主要……◎
- ◎……各國特許出願費用一覽)를 油印하여 會員에게 提供한 바 있다. 同油印資料 중에 日……◎
- ◎……本國「工業技術院 職務發明規程」은 그 후에 改正된 규정이 入手되었으므로 이를……◎
- ◎……譯載키로 한다. 아울러 日本에서 현재 適用하고 있는 직무발명의 基本概念을 비……◎
- ◎……못해서 國家公務員 職務發明에 관한 補償金請求 및 支拂方法·同支拂要領·國有……◎
- ◎……特許實施契約書·同契約說明書·同實施料算定方式 등을 連載한다. ……………◎

### 1 職務發明의 基本概念

職務發明인 從業員發明의 基本은 發明者主義를 採用하고 있으며 理念은 發明을 個人的 知的 產物로 보고 權利는 原始的으로 發明자의 것으로 인정하되 出願은 使用者나 發明자가 다같이 할 수 있으나 發明代價는 補償하게 되어 있다.

또한 직무발명의 定義는……

① 一般的으로는 組織의 組織員이 이룩한 發明으로서 그 發明이 회사의 業務範圍에 屬하고 또한 그 發明을 하기에 이른 行爲가 그 조직원의 조직내에서의 현재 또는 過去의 직무에 속하는 發明을 말 한다.

② 직무발명에 대해 發明자가 特許權을 取得했을 때에는 조직은 그 發明에 대해 無償의 通常實施權을 保有 한다.

③ 조직은 직무발명 이외의 發明에 關聯된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에 對해 豫約承繼할 수는 없다.

④ 조직은 직무발명에 關聯된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에 對하여 契約, 勤務, 規則 등으로서 예약한 경우에는 發明자에 對해서 適當한 대가를 支拂해야 한다 등이다.

### 2 工業技術院 職務發明規程

(院訓令 第134號：1970. 10改正)

#### 第1章 總 則

##### <目 的>

第1條 이 規定은 工業技術院의 試驗研究所에서 시험연구에 從事하는 職員(이하 직원이라 함)이 이룩한 發明의 取扱에 對해 규정하고 그 發明者로서의 權利를

保障함으로써 發明 및 研究意欲의 向上 圖謀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##### <定 義>

第2條 이 규정에서 다음에 揭記하는 用語는 다음 정의에 의한 것으로 한다.

1. 業務發明이란 職원이 이룩한 發明으로서 그 內容이 當該發明을 이룩한 職원이 所屬하고 또는 소속한 試驗研究所의 管掌하의 업무 範圍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.

2. 직무발명이라 함은 업무발명으로서 當해 發明을 이룩함에 이른 行爲가 公業기술원의 시험연구소에서 的 當해직원의 現在 또는 過去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.

3. 發明자라 함은 업무발명을 이룩한 職원을 말한다.

##### <權利의 歸屬>

第3條 國家는 직무발명에 對해서는 이 規定이 定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承繼할 수가 있다.

#### 第2章 届出 및 出願

##### <届 出>

第4條 職원은 업무발명을 했을 때는 빨리 그 뜻과 그 發明의 內容을 詳記한 書面 및 意見書를 添付하여 자기 소속한 試驗研究所長(이하 所長이라 함)을 거쳐서 工業技術院長(이하 院長)에게 제출해야 한다.

2. 소장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제출을 受理했을 때는 그 제출에 關聯된 書類를 권리의 귀속 등에 關한 意見書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##### <出 願>

第5條 원장은 前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제출이 있을 때는 當해 제출에 關聯된 發明이 직무발명인가를

확인하여 직무발명이라고 인정되었을 때는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국가가 승계하는지의 與否를 결정해야 한다.

2. 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를 국가가 승계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곧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.

〈發明者의 出願〉

第6條 발명자는 원장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발명자의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이 아님을 인정하고도 특허를 받을 권리를 국가가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가 아니면 특허출원을 해서는 안된다.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할 때 또는 緊急히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例外이다.

2. 발명자는 전항의 但書規定에 따라 특허를 출원했을 때는 곧 그 뜻과 그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를 複寫하여 그 1部를 첨부, 소장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〈職務發明審査에 대한 諮問〉

第7條 원장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이 있을 때는 그 제출에 관련된 발명이 직무발명인가를 確認하여 직무발명임을 인정했을 때는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
2. 원장은 미리 직무발명심사회에 자문해야 한다.

3. 직무발명심사회는 전항의 자문을 받았을 때는 그 날부터 3個月 이내에 答申해야 한다.

〈特許를 받을 權利 또는 特許權의 讓渡義務〉

第8條 발명자는 원장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발명자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 권리를 국가에 양도해야 한다.

〈通知〉

第9條 원장은 제5조 1항이나 제7조 1항의 인정 또는 결정을 했을 때는 그 뜻을 빨리 그에 관련된 발명자에게 소장을 거쳐서 文書로 통지해야 한다.

第3章 職務發明審査會

〈設置〉

第10條 공업기술원에 직무발명심사회를 설치하고 그 庶務는 總務部研究業務課에서 掌管한다.

〈審議事項〉

第11條 직무발명심사회는 제7조 및 제14조에 정한 事項外에 원장의 자문에 應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.

〈組織〉

第12條 직무발명심사회는 會長·副會長 및 委員 若干名으로 조직한다.

2. 회장은 원장이 맡아 會務를 總理한다.

3. 부회장은 總務部長이 맡아 회장을 補佐하고 회장이 有故時는 그 직무를 代理한다.

4. 委員은 공업기술원의 各試驗研究所長이 된다.

5. 발명자는 회장의 許可를 맡아 직무발명심사회에 出席하여 그 발명에 대해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.

第4章 雜則

〈補償金請求〉

第13條 원장은 제5조 2항의 특허 출원을 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 혹은 특허권을 讓受한 경우에 특허권의 設定登錄 또는 移轉登錄을 받았을 때는 그 발명자에 대하여 그 뜻과 國家公務員의 직무발명에 관한 補償金の 청구 및 支拂方法(特許廳長 通牒 第635號)에 따른 登錄補償金請求書를 제출하도록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.

〈異議申請〉

第14條 발명자는 그 발명에 관련되는 제5조 1항 또는 제7조 1항의 인정이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제9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문서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.

2. 원장은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직무발명심사회의 會議에 부쳐 事案을 결정하고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2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.

〈秘密의 保持〉

第15條 발명자 및 직무발명심사회의 關係者는 발명의 내용이나 그외에 발명자 및 그 국가의 利害에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期間 중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.

〈職務發明이 아닌 業務發明〉

第16條 원장은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직무발명이 아님을 인정한 발명에 대해 발명자로부터 申告가 있을 때는 그 발명이 업무발명인가를 확인하여 업무발명임이 인정되었을 때는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
2. 제3조, 제5조 2항, 제8조, 제9조, 제13조 및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발명에 대해서 準用한다.

〈實用新案權 및 意匠權에 관한 準用〉

第17條 이 규정은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대해서 準用한다.

〈事務의 委任〉

第18條 원장은 제4조, 제5조, 제8조, 제9조,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의 수리, 인정, 결정, 출원, 讓受 및 통지에 관한 사무와 이들 사무의 附帶事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소장에 위임할 수가 있다.

(계속) <C 記〉